



화정 교육 통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55
<http://전주화정초등학교.kr>
(교무실 270-8403, 행정실 270-8474)

함께 배우고
서로 나누며
더불어 성장하는
화정 교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 9. 15.

전주화정초등학교